실 손 의 료 보 험　중 지　및　재 개　특 약

◈ 목 차 ◈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 3

제1조【목적】.....3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3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4
제4조【기타 사항】.....6
< 별표1> 7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

제1조【목적】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약」(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이라 합니다)의 계약자(이하 “개인실손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개인실손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
노후· 유병력자· 여행 실손의료보험 및 단체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을 말함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

① 계약중지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중지(이하 “계약중지”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실손의 계약자가 해당 개인실손을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중인 경우
2. 제1호 개인실손의 피보험자가 단체실손의료보험(이하 “단체실손”이라 합니다)의 피보험자이고, 단체실손에 가입한 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단체실손의료보험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으로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보험을 말함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실손의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중지는 이루어집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중지 청약을 받고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중지 확인서”와 “중지지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중지지급금
개인실손을 중지한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지한 보장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중지시점의 책임준비금 및 미경과보험료(미경과위험보험료 포함) 합산액

④ 계약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시점부터 회사는 중지한 개인실손 보장종목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중지한 보장종목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중지가 성립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중지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줍니다.

⑤ 계약자는 '계약중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서 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고 계약중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으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중지 청약철회 신청 시 이미 지급받은 중지지급금을 회사에 환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철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중지를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제3조 제11항 및 제12항 포함), 계약중지되는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중지 시 유의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이 특약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⑧ 회사는 계약중지를 처리함에 있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보장종목을 중지처리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보험종목에 대해 중지처리를 합니다. ("<별표1>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이 다른 경우 중지가능한 보장종목" 참고)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

①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인실손을 계약중지한 계약자는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이하 "계약재개"라 합니다)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실손이 종료된 경우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재개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재개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실손 계약종료 전이라도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중지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 중 단체실손에서 보장받지 못하게 된 보장종목에 대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이 특약인 경우 그 특약의 주계약이 소멸되면 계약재개를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계약의 소멸 사유
①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에는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등을 포함함]

④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을 받고,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계약재개가 성립한 이후 지체없이 중지되었던 개인실손이 계약재개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안내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재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중지된 상태로 환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 약관을 따릅니다.

⑦ 회사는 계약자가 계약재개를 청약할 때에 이 특약의 중요한 내용(제3조 제11항 및 제12항 포함), 계약중지된 실손과 계약재개되는 실손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계약재개 시 유의 사항 등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청약 후에는 지체 없이 이 특약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⑧ 회사는 계약재개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또한, 회사가 계약재개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⑨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은 계약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는 개인실손이므로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장범위 등은 중지된 개인실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하는 개인실손
회사가 개인실손을 판매중지한 경우 당시에 판매했던 개인실손 중 계약재개 되는 개인실손을 말함

⑩ 제8항에 따라 보장이 개시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은 소멸합니다.

⑪ 회사는 계약재개 청약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자의 계약재개를 승낙합니다.

1.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개인실손이 중지된 후 피보험자의 단체실손 보장공백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이고, 누적하여 3개월 이내인 경우.(보장공백기간 계산 시 금번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계약재개 청약일까지 기간은 제외됨)

보장공백기간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해지, 재가입 지연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만 단체실손의 보장종목 변경은 보장공백기간으로 보지 않음

단체실손 종료일
계약재개 계약자가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 이전에 개인실손을 중지· 재개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금번 계약재개 청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단체실손 종료일을 말함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대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과 중지된 개인실손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회사가 중지된 개인실손과 동일한 조건의 개인실손을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보유하지 않고 있어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자기부담금 등을 중지된 개인실손과 가장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봄)

   가. 보장종목

나. 보험가입금액

다. 자기부담금

라.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⑫ 회사는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강화(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확대 등)되는 등 제1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재개 신청 계약자가 제11항 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를 하여 승낙하거나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 따라 중지된 보험종목은 소멸됩니다.

제4조【기타 사항】

① 계약중지된 개인실손 약관의 「계약전 알릴의무」, 「상해보험계약후 알릴의무」,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②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약」(이하, "조건부 특약"이라 합니다), 「특별조건부 특약」은 계약재개된 개인실손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특약의 경우 계약중지된 개인실손의 청약일로부터 5년간 조건부 특약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조건부 특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④ 이 특약의 제2조(계약중지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중지 전 개인실손의 약관을, 제3조(계약재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재개 후 개인실손의 약관을 각각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계약중지 및 계약재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특약을 부가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계약재개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계약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별표1>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이 다른 경우 중지가능한 보장종목

1. 2010.05.17 ~ 2013.03.31 (특약) 사이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담보종목) [개인실손]	보장종목(담보종목) [단체실손]
종합입원형	질병입원
	상해입원
종합통원형	질병통원
	상해통원

주1) 예를 들어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은 종합입원형(질병입원+상해입원)이고 가입한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이 질병입원과 질병통원인 경우, 보장종목이 겹치는 개인실손 종합입원형을 계약중지할 수 있음.
주2)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중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의료비 특약의 전환 등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

2. 2013.04.01 ~ 2014.10.31 (주계약) 사이에 체결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지 가능한 보장종목(담보종목) [개인실손]	보장종목(담보종목) [단체실손]
종합형(표준형/선택형)	질병입원
	질병통원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형(표준형/선택형)	질병입원
	질병통원
상해형(표준형/선택형)	상해입원
	상해통원

주1) 예를 들어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은 종합형이고 가입한 단체실손의 보장종목이 질병입원과 질병통원인 경우, 보장종목이 겹치는 개인실손 종합형을 계약중지할 수 있음.
주2)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중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의료비 특약의 전환 등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름